

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55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7. 12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제안사유

현행 보건소수가조례중 실효성이 없고 존치시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을 정비하므로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규제완화로 민원 편의제공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검사, 시험 등을 위한 관계 출장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 삭제함.
(안 제8조제3항)
- 납부한 수수료 및 여비 반환 제한 내용 개정함.(안 제8조제4항)
- 시험결과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도록한 기준은 불필요한 규제이므로 삭제함.(안 제10조)
- 시험성적서의 원본의 말소 및 이유공고사항 삭제함.(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근거법규 : 지역보건법 제14조

4. 본 문 : 붙임 참조

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(안)

고성군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8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 중 “수수료 및 여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”를 “수수료는 검사, 시험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”로 한다

제10조를 삭제한다.

제11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.구 조문 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수수료 및 징수방법) ①~②(생략) <u>③검사, 시험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 출장을 요하는 당해 출장공무원의 여비는 고성군여비지급조례에 의하여 시험의뢰자가 사전 납부하여야한다.</u> <u>④검사, 시험등을 위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 및 여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제10조(시험결과의 공고금지) 제7조의 <u>규정에 의한 시험의 결과는 시험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등에 이용할 수 없다.</u></p> <p>제11조(성적원본의 말소) ①보건소장은 <u>시험의뢰인이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 할 수 있다.</u> <u>②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말소 당해자의 성명과 말소 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8조(수수료 및 징수방법) ①~②(현행과 같음)③ < 삭제 > <u>④검사, 시험등을 위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검사, 시험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 삭제 ></p> <p>< 삭제 ></p>